

검 토 의 건 서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(3666)

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66번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도시관리의 연속성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으로,

제안 이유 및 신설조항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동의하나, 기존 조항을 보다 명확화하고,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21조제1항 일부 수정이 필요한 바, 본 개정 조례안에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.